

보 / 도 / 자 / 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4. 5. 7

(경 유):

보도일자: 2024. 5.10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

페이지: 10p

주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보조 차별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4. 5. 10(금)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서-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진 정 인 : 임종운 (발달장애 당사자)

연대발언1: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연대발언2: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닫는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진정서 제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함

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2024년 4월 5일, 6일, 10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기에 어떠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냐에 따라 내가 원하는 나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의사가 반영되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도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경우에는 선거에서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이해하기쉬운 정보나 후보자와 정당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당로고와 후보자 얼굴이 나와 있는 그림투표용지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유권자와 장애인단체들의 지난 10년의 요구를 법과 제도가 바꿔야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왔습니다. 오히려 일정정도 제공되었던 정당한 편의마저도 제한하고 축소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보조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유권자들과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 선거(이전 선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에 대하여 투표보조를 선거메뉴얼 지침으로 보장하여오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련 지침을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많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참정권을 침해당한 25명의 발달장애인 유권자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차별진정하여 2021년 3월 26일 시정권고 결정(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전(全) 선거사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받은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차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차별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6.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차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가 필요합니다. 끝.

※별첨자료 _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진 정 서

진정인

- 임종운 외 발달장애인 유권자 8명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진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 서울특별시·경기도·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1. 진정취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과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에서는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을 규정하는 투표관리메뉴얼 지침에서 발달장애유형을 제외하였고 결국 이러한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투표과정에서 인적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 10)은 2020년 25명의 발달장애인 유권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차별진정하여 2021년 3월 26일 시정권고 결정(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전(全) 선거사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인

권위원회 시정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차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금 차별진정 하오니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시정권고를 내려 또다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2. 진정이유

가. 이 사건 진정의 경위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1)~9) (임종운 외 8인)은 피진정인들이 투표관리메뉴얼 지침에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해당 사례에서 발달장애인을 꼭 집어서 ‘발달장애인과 그 동행인에게 소근육 발달 지연이나 손떨림처럼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인지를 확인하면서 투표보조의 이유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인지능력이 없다”고 답한 사례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에 속한 다며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적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

진정인 10)은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 1)~2)는 국민의 선거과정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선거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번 투표관리메뉴얼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서 유독 발달장애인만 투표보조 관련된 지원예외 사례를 명시하여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였습니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에 따라 투표보조를 지원받아야 했었던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선거관계자들이 제대로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아 차별행위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서 사실상 관리감독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 이 진정 사건의 경위

진정인 1)~9)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모 또는 활동지원사 등과 함께 투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모르거나 투표 과정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때문에 투표보조를 받기 위하여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선거사무원들로부터 신체장애가 없는 한 투표보조가 어렵다는 매뉴얼 지침에 따라 투표보조를 거부당하였거나 오히려 매뉴얼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신체적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확인받지 못하여 실제 투표보조를 지원받지 못하였거나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별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이와는 반대로 발달장애인 특성으로 기표가 어려워 투표보조를 요청하여 지원받은 사례(서울시 종로구,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무안군 등)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투표소 현장 선거관리자가 매뉴얼대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거나 또는 현장 선거관계자의 재량에 따라서 누구는 투표보조를 지원받고 누구는 투표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진정인 10)은 진정인 1)~9)로부터 관련 차별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차별진정하여 시정권고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이 반복되고 있기에 다시금 강력한 시정권고 결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4) 진정의 이유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투표보조 지원에 대한 규정은 장애유형의 상황에 따라 기표 과정에서 인적지원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으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규정상 발달장애인을 이 범위안에 넣을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시정권고에서 발달장애인 장애특성상 투표보조가 필요함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본질적으로 '같은것'에 대해서 '다른 취급'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 획일적으로

‘같은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때 ‘같은 취급’의 금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배제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점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인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사전투표일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피진정인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의 주체이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57조에서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행위가 어려울 때에는 투표보조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이 규정이 다른 장애 유형을 배제하여 참정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제2항에 따라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편의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유권자 입장에서 투표행위는 각종 정보 수집을 통해 선호하는 정당(무소속 포함)을 선택하고 후보를 결정하는 행위와 실제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기표 행위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보조원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투표소에서의 기표 행위와 관련하여 물리적 접근과 함께 일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글자를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이 부착된 투표용지를 통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직접 기표행위를 도울 수 있는 공적 보조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보조원’은 발달장애인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부모나 사회복지사 또는 활동지원인이 아니라, 피진정인이 발달장애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면서 조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공적 보조원(조력인)’으로 투표소마다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진정인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기표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동반투표자의 입장을 허용하였으므로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에 발달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선거에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 지원을 위해 ‘공적 보조원(조력인)’ 배치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였지만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또다시 반복된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5) 관련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결론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에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전반이 발달장애인의 인지의 어려움에 대한 선입견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오랜시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로 판단되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보다 오히려 축소하여 또다시 차별행위를 자행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2021년 차별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또다시 차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여 조속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시정권고를 내리기 바랍니다.

2.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마련한 매뉴얼상 구체적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필요여부 자체도 현장 투표관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된 교육과 관련하여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전 선거관계자들에게 장애인권과 응대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차별행위와 관련, 해당 차별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내리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별첨자료]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보조 차별내용

	진정인	장애유형	차별내용
1	임종운	지적	글씨를 잘 모르고 한손이 불편하다고 활동보조인이 투표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못 들어가게 함. 결국 혼자 들어갔음. 투표종이에 후보자 사진도 없고 투표종이도 너무 길어서 결국 익숙한 이름인 것 같은 *번을 찍고 나왔음.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보조 지원 받았음
2	김00	지적	투표매뉴얼 61쪽을 보여주시며 중간부분에 적혀 있는 사례(인지의 어려움은 투표보조 안됨)를 언급하시며 기표할 수 없는 상태(손떨림이 있거나 도장을 찍지 못하는)가 아니라서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야기 함. 그래서 떨림은 없지만 강직만 있다고 했더니 결국 투표보조 안된다고 해서 혼자 들어감
3	이0	지적	보행장애나 손떨림, 시각장애가 없으면 투표보조 안된다고 함. 공문 책자를 달달 읽으면서 안된다고 함
4	허00	지적	손이 떨려서 도저히 혼자 기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투표도움을 줄 수 없고 선관위 지침이라고 함. 결국 혼자 들어갔는데 당사자가 나올 때 투표용지도 달랑달랑 들고 나오자 선관위 사람들이 급하게 다가가서 용지를 접어 줌. 칸 안에만 잘 찍었는지 물었더니 자기네는 절대 훑쳐보지 않았다고 함.
5	김00	지적	발달장애로 혼자 할 수 없으니 본인이 도장만 찍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함. 민간인이 어딜 감히 들어가냐고 함.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보조를 했었음. 결국 투표도 못하고 나옴
6	강00	자폐	어머님이 아들의 장애 특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체장애인이 아니면 투표보조가 힘들다고 함. 혼자서 투표를 하려다 보니 기표를 못하자 선관위 관계자가 “그냥 (투표함에) 넣으세요” 라고 함. 이에 “투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넣느냐며 싫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그냥 넣으세요!” 라고 강요했다고 함. 결국 아들의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 거부 가해자에의 손에 쥐어주고 귀가함
7	김00	지적 언어	신체장애인이 아니면 무조건 함께 들어가는 건 안 된다며 투표보조를 거부 당함. 아들은 숫자와 글씨에 대한 인지가 안되고 장애정도가 심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렵다고 계속 주장하던 중 옆에 있던 남성직원이 선관위측에 문의해본다고 잠시대기해 달라고 하였음. 이후 관계자가 와서 아들이 “손떨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렇다”고 대답하여 결국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음. 최초 투표보조를 거부당해 강하게 항의한 끝에 투표보조가 진행됨
8	윤00	지적 지체	활동지원사와 방문. 지적•지체 중복장애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투표보조 못 한다고 함. 21대 대통령선거 때는 했는데 왜 안되냐고 항의해도 자신은 관여 할 수 없다고 함. 손떨림도 있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워 도장 찍는 것이 힘들다고 했음에도 안된다고 함. 도장을 제대로 못 찍으면 무효표 처리되지 않느냐고 문자 자신은 관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함
9	박00	지적 뇌병변	활동지원사와 방문. 글씨와 숫자도 읽지 못하고 팔도 짧아 기표대까지 거리가 멀다고 장애특성을 설명했음에도 무작정 안된다고 함. 21대 대통령선거 때는 되었는데 왜 안되냐고 항의하자 중앙선관위에 전화하고 나서도 안된다고 함. 결국 당사자 혼자 들어가서 투표함